

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직제개편에 따라 동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등 변동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중 "지역교통과장"을 "교통행정과장"으로 변경(안 제4조제3항)
-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간사를 "물가계장"에서 "업무담당계장"으로 변경(안 제10조제2항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(1995.1.5. 법률제4877호) 제1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(1994.12.1. 대통령령제14422호)제42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(1995.3.23.

- 규칙제198호) 제19조 및 제24조
- 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- 5. 예산조치필요성 :예산조치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"지역교통과장"을 "교통행정과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중 "물가계장"을"업무담당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4조(위원회구성)①(생략) ②(생략) ③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1인(시민보건의위원회 위원중 1인), 생활체육과장, 재무과장, 위생과장, 산업과장, 지역교통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장, 교수,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위원회구성)①(현행과같음) ②(현행과같음) ③..... (생략) , 교통행정과장, (생략)
제10조(간사)① (생략) ②간사는 물가계장이 된다. ③(생략)	제10조(간사)①(현행과 같음) ②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 ③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'95. 5. 8.
시민보건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:'95. 5. 2. 마포구청장

나.회부일자:'95. 5. 2.

다.상정일자:제29회입사회제1차위원회('95.5. 8.)상정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김창수 청소과장)

가. 제안이유

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의 성질상 담기 어려운 깨진유

리, 장관지, 정원손질로 생긴 일반폐기물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·공급하여 주민편의 및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격봉투의 종류, 재질, 구조, 모양등에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규격봉투의 종류를 종전에 “가정용·사업장용 및 공공용봉투”에서 “일반규격봉투,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”로 구분함(안 제14조)
- 규격봉투의 색깔, 용량, 규격, 사양, 재질등에 KS규격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함(안 제15조)
-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종전에 6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하여 특수규격봉투는 1종으로, 일반규격봉투는 30ℓ를 신설하여 7종으로 구분함(안 별표2)
- 종전에 봉투의 용량, 용도, 규격및 두께를 본 조례로 규정하였던 것을 KS규격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 조례별표에 용량과 용도만 규정함(안 별표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조례(안)은 주민들이 이사나 집수리 때 무게나 부피등으로 인하여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유리·전자재·비닐장판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등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향후 규격봉투의 생분해성 비닐화 및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의요지(정연우 위원) : 제15조 본문 중 “규격봉투의 사양”은 무슨 뜻인가?
- 답변요지(김창수 청소과장) : 규격봉투의 모양이나 형태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2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의 성질상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, 장관지, 정원손질로 생긴 일반폐기물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·공급하여 주민편의 및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격봉투의 종류·재질·구조·모양등에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골자

- 규격봉투의 종류를 종전에 “가정용·사업장용 및 공공용봉투”에서 “일반규격봉투·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”로 구분함(안 제14조)
- 규격봉투의 색깔·용량·규격·사양·재질등에 KS규격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함(안 제15조)
-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종전에 6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하여 특수규격봉투는 1종으로, 일반규격봉투는 30ℓ를

신설하여 7종으로 구분함(안 별표2)

○중전에 봉투의 용량·용도·규격 및 두께를 본 조례로 규정하였던 것을 KS 규격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에 용량과 용도만 규정함(안 별표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(1995.1.5. 법률제4877호) 제15조 및 제128조
- 폐기물관리법 (1993.3.6. 법률제4541호) 제4조 및 제13조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(1993.9.9. 총리령 제431호) 제7조

4. 개정조례(안):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: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 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규격봉투의 종류등)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,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.

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,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규격가정용봉투에,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규격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.

③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,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규격가정용봉투에,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규격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.

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

등) 규격봉투의 색깔, 용량, 규격, 사양, 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는 흰색(반투명)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(주황)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
2.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
3. 규격봉투의 종류, 재질, 구조, 모양, 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. 다만, KS 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, 구조, 모양,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실정에 알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

제17조 제1항중 “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15조 제1호내지 제3호”로 한다.

제18조 제1항중 “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”를 “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”로 한다.

제27조 제2항중 “가정용봉투”를 “일반규격가정용봉투”로 한다.

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4를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중 “ $\frac{12}{마포}$ ”를 “ $\frac{14}{마포}$ 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급규격봉투의 가격(제11조제2항관련)

<일반규격봉투 가격>

(단위 : 원)

구 분	가 정 용	사 업 장 용
5 ℓ	70원	-
10 ℓ	130원	-
20 ℓ	260원	280원
30 ℓ	380원	410원
50 ℓ	630원	680원
75 ℓ		1,010원
100 ℓ		1,350원

<특수규격봉투 가격>

(단위 : 원)

구 분	가 정 용	사 업 장 용
50 ℓ	780원	830원

<봉투 용량별 용도>

용 량	용 도
5 ℓ	일반가정용
10 ℓ	일반가정용, 공공용
20 ℓ	일반가정 및 사업장용, 공공용
30 ℓ	일반가정 및 사업장용
50 ℓ	일반가정 및 사업장용, 특수가정 및 사업장용, 공공용
75 ℓ	일반사업장용, 공공용
100 ℓ	일반사업장용, 공공용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규격봉투의 종류) ①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·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.</p> <p>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,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.</p>	<p>제14조(규격봉투의 종류 등)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·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.</p> <p>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,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규격가정용봉투에,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규격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.</p> <p>③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,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규격가정용봉투에,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특수규격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.</p> <p>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.</p>
<p>제15조(규격봉투의 색깔·규격 및 재질 등) 규격봉투의 색깔·용량·규격·사양·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,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(주황)색, 공공용봉투는 옅은청색으로 한다. 2.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. 3.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. 4.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	<p>제15조(규격봉투의 색깔·규격 및 재질 등) 규격봉투의 색깔·용량·규격·사양·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는 흰색(반투명),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(주황)색으로 하고,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. 2.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. 3. 규격봉투의 종류·재질·구조·모양·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. 다만, KS 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·구조·모양·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구 실정에 알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)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7조(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)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)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(이하 “봉투판매소”라한다)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8조(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)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(이하 “봉투판매소”라한다)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</p>	<p>제27조(수수료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'95. 5. 4.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5. 5. 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5. 5. 2.
- 다. 상정일자 : 제2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'95.5.4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손시익 도시정비국장)

- 가. 제안이유
미관지구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, 미관지구내의 대지안의 공지적

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 전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함.(안 제5조제14호)
-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 3m 후퇴부분의 대지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산입토록 함. (안제17조제3항제3호)
- 미관지구안의 근린생활시설중 정육점의 경우 미관도로에서 정육점의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제한을 완화토록 함 (안 제30조제3항 단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관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건축선 후